

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「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

제정 2024. 11. 22 규칙 제1314호

제1조(「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문화관광과의 분장사무란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 중 “문화재보호구역”을 “문화유산보호구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